

[] 휴업
소독업의 [] 폐업 신고서
[] 재개업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고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	------	----

신고자	성명(대표자)	주민등록번호
	주소	

상호(명칭)

소재지

휴업·폐업·재개업 일시	휴업기간(휴업의 경우)	~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

휴업·폐업·재개업 사유

신고증 분실 사유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
이 [] 휴업, [] 폐업, [] 재개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자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소독업 신고증 원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

참고 및 유의사항

-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1항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(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).
-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소독업 신고증을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분실 사유를 적으면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